

建築士의 建築創作風土 改善策

[2]

梁 元 永

파. 建築主에 대한 양케이트 調査結果

(1) 設計 事務所를 선택하는 경우 응답자 36명 중

친지의 소개로	:	14명
단골사무실이므로	:	18명
기타	:	4명

(2) 建築許可 과정에 各種 具備書類 準備過程 난관 여부

응답자 36명 전원이 어렵지 않다는 답변

(3) 工事過程에서 違法工事を 하게 되는 경위

응답자 24명 중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므로	:	11명
违法인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	4명
경미한 위법이므로	:	4명
기타	:	5명

(4) 만일 担当 建築士가 아닌 타 기관(建築物 공동 監理단등)에서 建築物 監理를 하게 되고 竣工검사 신청도 감리단이 위임맡게 된다면 違法行為 有否

응답자 28명

그래도 사소한 위법행위는 불가피하다. 6명

违法行為를 할 수 없다. 22명

모르겠다. 0명

(5) 竣工시 具備書類 준비과정 난관여부 응답자 26
名中 대체적으로 수월하다는 답변.

이상에서 檢討한 바 建築許可 및 竣工시 具備書類는 대체적으로 수월하다는 답변이나 그 이유는 設計事務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씨 - 비스行為(즉, 각종 구비서류를 설계사무소에서 준비하여 준다)의 결과가 크지 않나 생각된다.

違法工事を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한 답변은 응답자의 45%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음을 믿고 위법 行為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建築士가 告発하지 않고 적당히 준공처리하여 출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建築士의 業務상 隘路中 가장重要な 문제이며 또한 建築士의 새로운 업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만일 담당 건축사가 아닌 타 기관(건축물 공동감리단등)에서 건축물 감리를 하게 된다면 위법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위법행위가 불가함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인과 관계로 맺어진 建築士가 아닌 타 기관에서 공정히 처리한다면 違法行為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규모 建築物의 監理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제 1절 建築士 業務의 問題點

建築許可 対象地域 : 建築法이 제정된 1962年度에는 都市計劃 区域내에만 建築許可를 받도록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現在는 市, 邑, 面, 区域은 물론 國土이용 관리법에 의한 基準地価 고시 対象地域, 国道, 地方道, 철도 연변구역, 공업지역, 취락지구 등 전 국토에 걸쳐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 : 建築法 第五條에 의거,

- 특수 建築物用에 공하는 연면적 $100m^2$ 이상의 것
- 연 면적이 $3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 연 면적이 $200m^2$ 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 기타 都市計劃区域, 國土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地帶,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区域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建築許可 対象区域은 全國土에 걸쳐 實施하고 나날히 發展하는 國力에 비례하여 각종 建築物의 수요는 모든 建築資材 生產能力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모든 建築物은 大形化하여 가고 그 구조設備 계획등이 고도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과거 1人の建築士가 처리하던 건축계획이 現在는 분업화되어 建築計劃, 構造계산, Design, 전기설비, 위생·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공기조화 설비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建築기술에 발을 맞추고자하면 建築士는 항상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고 研究하여 새로운 建築

創作活動에 總力を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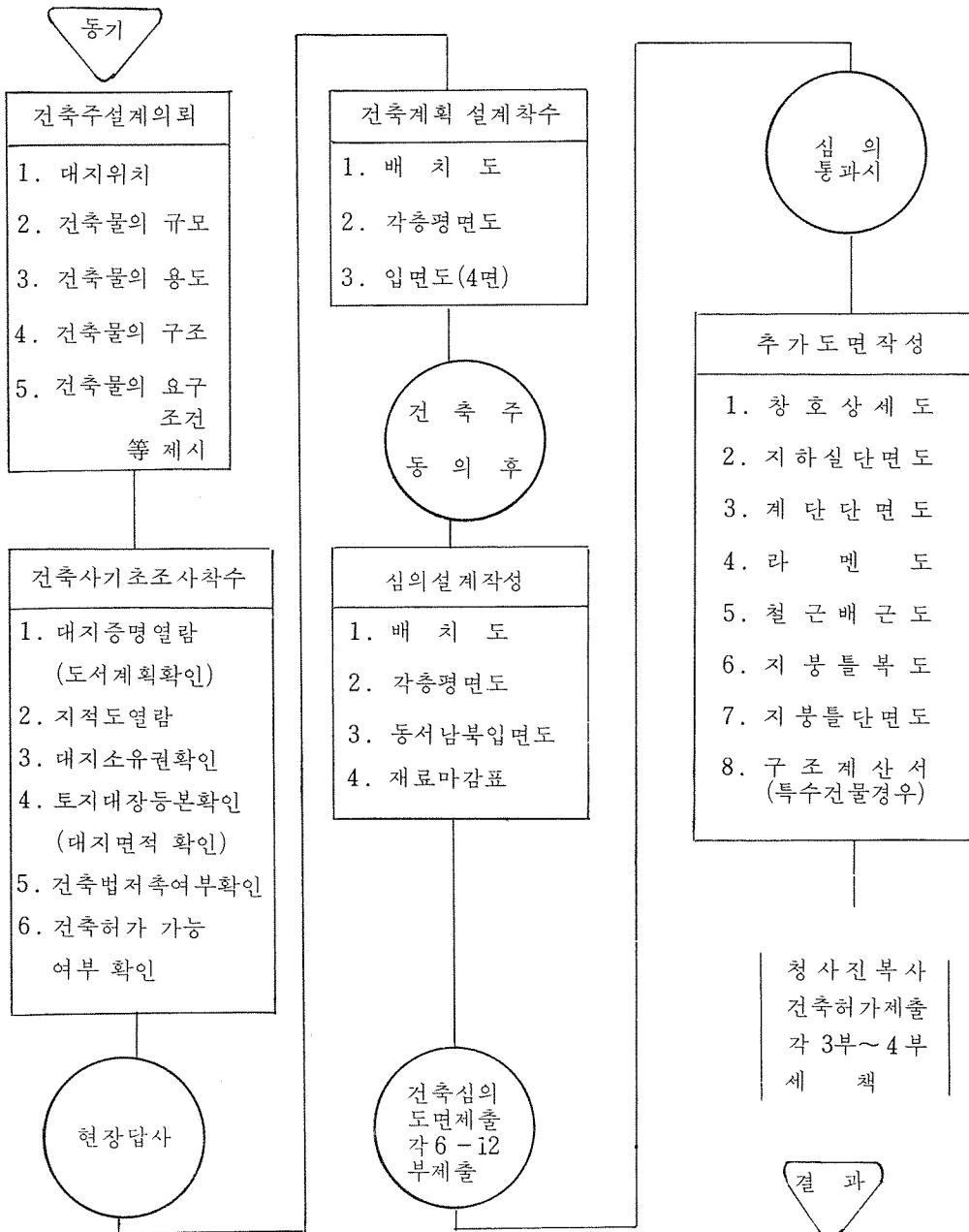
제 2절 建築許可에서 준공까지의 過程

建築許可是 建築法 제 4 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郡守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建築設計를 수임 받는 建築士가 設計行為를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필증을 교부받기 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建築 설계 과정도

〈표19〉



〈表21〉

건축허가 과정도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세부 순	
1. 건축사 연락 명절 검표	
(건축사 3인 연락 서명)	
2. 현장조사서 (부록)	
(건축사 특별면언)	
3. 건축허가 신청서	
4. 건축주 주민등록 등본	
5. 배지증명 (이자증지증명)	
6. 배지 등기부 등본	
7. 토지 대장등본(필요시)	
8. 경계 명시증명도 (필수경우)	
9. 건축자재 사용신고서	
10. 차가 정호 설치 차서	
11. 하수도 차서	
12. 공사사 방서	
13. 배 치 부	
○ 대지 구획도	
○ 전 물 배치도	
○ 현장인력도	
○ 건축면적구획도	
○ 하수도 배관도	
○ 종합면적도	
14. 동서 남북 입면도	
15. 각 층면도	
16. 기초목도	
17. 차동보복도	
18. 주 단면도	
19. 체로마감표	
20. 청호상세도	
21. 지하설 단면도	
22. 계단단면도	
23. 라 벤 도	
24. 철근배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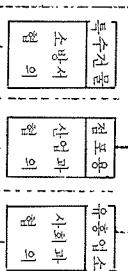
허가번호 기재	
허	가
6~12부	심의 도면 제출
25. 지붕돌복도	1. 표
26. 지붕돌단면도	2. 배 치
27. 구조체 설계 (특수설계)	3. 가. 대 지 구 치 도
28. 건축허가통보서	나. 건 물 배 치 도
29. 건축허가서	다. 현 장 안 내 도
30. 적 요서 (협회용)	라. 건 축 면 적 구 치 표
31. 설 계 계 약 서 (협회용)	마. 하 수 도 배 관 도
※ 도면은 3~5부작성	바. 중 횡 단 면 도
	사. 지 도
	3. 입 면 도 (2면)
	4. 각 층 평 면 도
	5. 체 료 마 감 도
	6. 주 단 면 도
	7. 라 벤 도
	8. 대 지 증 명 (이자증지증명)
	9. 1 /5000지도 (시청 심의)
	10. 투 시 도 ()
	11. 현장사진 (6~12매)
	12. 부시도 칼라사진 (12매)
	13. 심 의 신 청 서 신
	14. 상 청 조 사 신
	15. 심 의 결 과 보 고 서

〈表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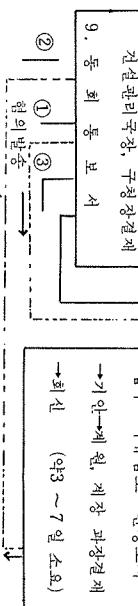
건축심의제도 과정도

건축 심의	
심의 위원	임원장 : 건축과장
〈구청〉	부위원장 : 건축과장 원 : 토목과장 원 : 주택과장 원 : 경찰서보안과장 원 : 소방서방호과장 원 : 공수전(건축과) 교
결재	〈구청〉 전설관리국장결재 구청장결재 (시청)
〈시청〉	전설관리국장결재 (시청 3일 요법)

통과 표 시	
통과	07
반려	
불	
제주 1회 심의 1일간 제출 자 구청 심의 일정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기안→제원, 계장, 과장
→회신 (약 3~7일 소요)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建築士의 業務量은 莫大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規模의 建築物이라 할지라도 建築計劃에서 竣工까지의 過程은 밀어지지 않을 程度의 많은作成, 提出等 過程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創意的이고 獨創的 作業이 아니라 틀에 박은듯한 구비도서를 製作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다람쥐 채바퀴돌듯 아까운 時間만浪費하는 이過程을 効率的이고도 간결하게 縮小시키는 方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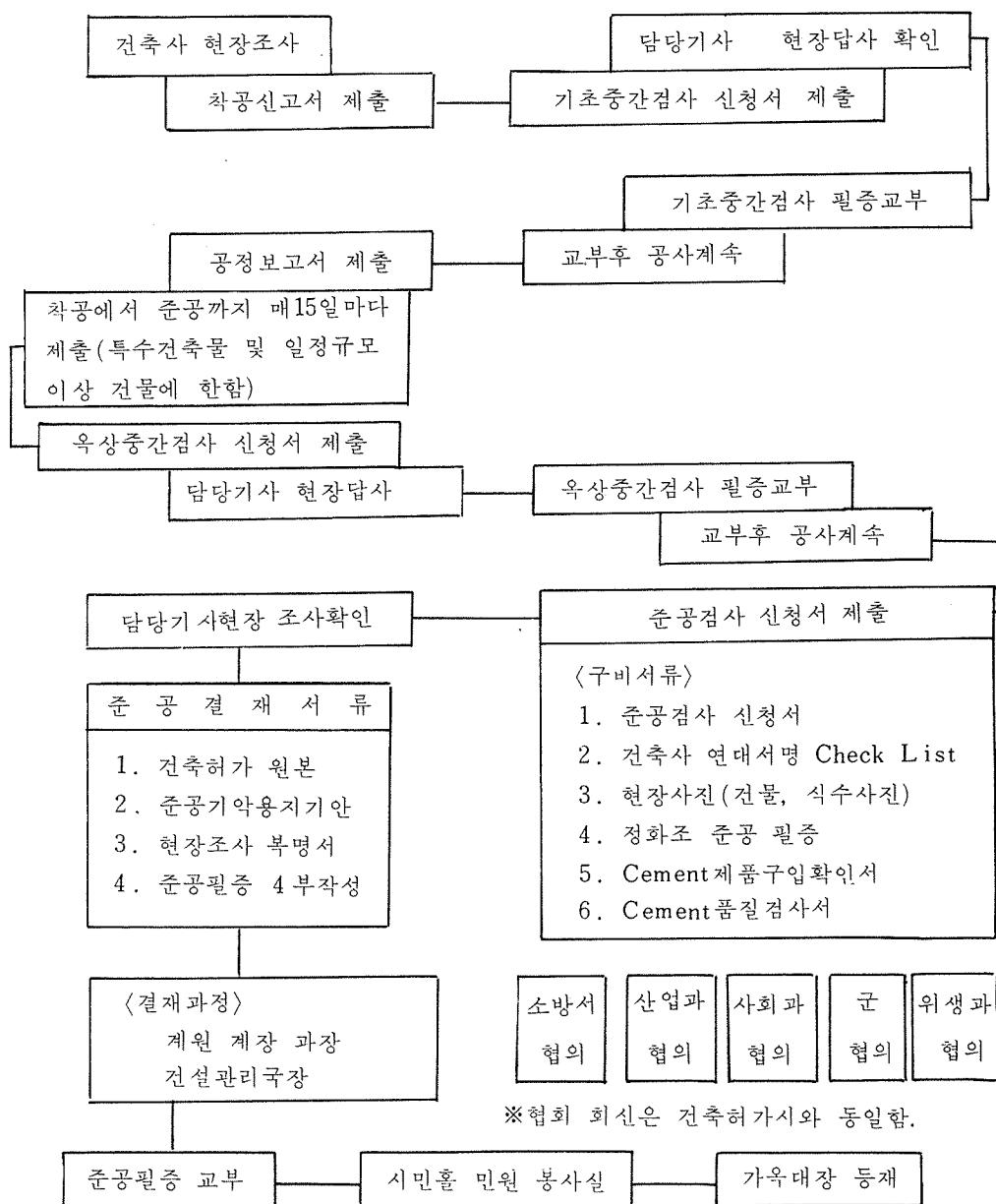
그 아까운 時間들을 모아 教育, 研究, 創作, 開發에 消費한다면 얼마나 좋은 創作物이 나올것인가. 모든 制度는 不信에서 비롯된다. 良質의 設計圖에 의거 良質의 建築物을 준법되게 시공한다면 그 많은 過程들은 必要 없을 것이다.

設計図書는 시공을 위한 図面이면 足하다. 行政 관서에서는 家屋台帳만이 必要한 것이지 各個 建物의 図面이 必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一棟의 建築物을 세우기 위하여 수십부의 設計圖가 관으로 接受되어야 할 必要가 있을까. 비단 建築士만의 일이 아니다. 各 区廳 建築課 図書倉庫를 연상해보자. 数萬件의 設計図書가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다.

매년 累績되고 있는 未決件으로 인하여 担當公務員의 業務量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莫大한 業務量으로 인하여 設計圖의 분실, 毀損等合理的인 図面管理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창의 카드에 모든 것을 記錄하여行政의 能率化를 期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에서 준공까지의 과정

〈表22〉



建築審議 제도과정을 檢討하여 보자.

一定規模以上의 建築物은 市廳審議를 받고 있다. (表-20)에서 보듯이 그 많은 図面을 設計하여 各種具備書類를 添附하고 現場寫真 12매, 투시도 칼라사진 12매, 정성을 다한 투시도 1점 등 아무리 작은規模의 建築이라 할지라도 20日 ~ 1個月의 時日을 所要하여 作成한 일련 서류 12部를 接受한다.

接受하는 建築士의 心情은 大學入学 試験을 치루는 受験生의 기분이 될까.

그러나 結果는 大部分 애매모호한 事由이다. 즉, 平面計劃修正, 입면도 再構想 等 20餘日間 공들인 図面을 불과 5分内外의 時間의 檢討로 当, 落의 판정을 내린다.

辯護人도 証人도 피고인도 없는 裁判이 数分間に 이루 어진 것이다. 무자비하고도 独善의 재판이 아닐 수 없다. 建築法 適法与否를 가리는 審查가 아니고 주관적인 問題에 对한 判定이다. 建築物은 造形藝術이요, 創作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다.

이 時間에도 많은 建築學徒가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렇게 배워준 教授님들이 弟子들의 創作品에 메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매우 조잡한 設計圖書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정도의 선별은 有能한 建築職 公務員이 能히 가릴 수 있는 問題이다. 이처럼 莫大한 人的, 物的, 時間的 損失을 감수하면서 審議制度를 最上의 方法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여튼 大部分의 審議圖面은 반려되어 나온다. 그어렵게 作成된 一件圖書와 투시도(市価 約5~10萬원)는 한 쪽구석에 내동댕이쳐진다. 아무나 집어가고 짓밟히고 나머지는 쓰레기통 경유 소각되어 버린다. 一件 数십만원의 国力이 浪費된 것이다.

本研究者가 審議도서 1件製作原価를 計算하여 본족 (規模: 2種 미관지구, 垒地100坪위 3層建物 연면적 66 0m²) 約246, 600원의 計算이 算出되었다.

서울市廳建築課에 1年間 接受되는 審議申請件数에 위의 經費를 計算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各区廳 및 全國 主要都市의 審議件数를 計算하면 天文学의 数字가 나올 것이다.

本研究者의 調査에 의하면 서울市에 接受되는 審議申請書 總 經費의 $\frac{1}{100}$ 該當하는 金額만 가지고도 全國建築士 및 建築職 公務員에게 아주 效果의 教育을 実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資質向上 및 實力培養으로 建築審議따위의 近視眼의 建築行政은 必要없게 될 것이다. 人力은 곧 資本이다. 人力경시현상은 없애야 한다.

建築士는 어느 分野 못지 않게 国家에 必要한 高級人力인 것이다. 제도만능 주의에서 脱皮하고 教育, 理解, 協助의 유도행정으로 国力의 集大化와 効率化를 期하여야 한다.

제 3절 建築工事 過程

建築工事에서 埃工까지의 過程은 〈表22〉와 같다.

各 区別로 다소의 差異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統一되어 있다.

1. 着工申告書: 提出時期는 착공 후 1주일内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建築主의 연락을 받거나, 建築士自意로 現場調査한 後 제출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水平規準를 設置는 監理者の 立会下에 실시되어야 建築線 및 隣接壟地 境界線과의 所定거리 확보에 이상이 없겠으나 履行이 되지 않고 있다.

지적 공사에서 측량한 경계는 垒地主의 손에 의하여 불과 60cm정도의 나무 말뚝을 박아 놓는 것이 상례이다.

몇 일후 건축사가 수평 규준을 확인차 현장 출장하여도 그 미덥지 못한 말뚝을 기준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이 위법 건축물 혹은 그 많은 진정 사항이 이웃간의 경계시비와 소정거리 미확보로 인한 분쟁임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허술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건축물이 준공된 후 경계시비가 발생하여 지적공사에 재측량을 의뢰하여 보면 약 30cm정도의 오차가 생기기도 한다. 측량사의 변명인즉 30cm의 오차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답변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고 편한 직업이기도 하다.

그처럼 발생한 오차로 인하여 건축사 3인이 애매하게도 몇 개월씩 영업 정지를 당하고 신문에는 불실 악역 건축사로 보도가 되고 해야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측량 오차 30cm는 아주 후한데 반해 측량사가 아닌 건축사에게는 소정거리 10cm 부족으로 연대 건축사 3인을 무더기로 징계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제도임에 틀림 없다. 건축사가 어떻게 현장 관리를 하여야 경계를 정확히 보전 할 수 있는지 관계 당국의 답변을 구하고 싶다. 경계 말뚝을 꼭 끌어안고 기초가 끝날 때까지 몇 일간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어도 30cm 오차는 막을길이 없다. 결과적으로 건축사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가 본의 아니게 위법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지를 확대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면 우선 지적 원선 지적 원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청 구획 정리과에서는 이 지적 원도를 발급 하여 주지 않고 있다. 건축사는 할 수 없이 대지 증명이나 환지 지구 일때에는 경계명시 측량 필증에 첨부된 측량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지를 확대하고 있다.

주위 가로망 또는 시중 청사진 가개에서 발매하는 청사진을 참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지증명에 첨부된 지적도로 설계사무소에서 대지 확대하여 건물배치하기는 정확치 못한 지적도이다. 대지증명에 첨부된 지적도 하단 비고란 제 1번에 다음과 같이 단서가 붙어 있다.

1.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지증명은 복사기에 의한 지적도임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지지구일경우 지적공사에서는 지적원도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중 지적도를 그려주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다. 수차 그 시정을 요구하여 보았으나 현장 말뚝이 있으니 그 말뚝을 참고로 하여 배치도를 그리라는 것이다.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고 지시 측량 필증을 요구하면 당연히 지적 원도에 의한 지적도를 도시하여 주어야겠고 현재 불펜으로 그리고 있는 제도를 바꾸어 오구로 참목하여 정확하게 도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평판 측량에 있어서 측침의 크기도 1 / 1200일 경우 전주크기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불펜으로 그리는 지적도는 1m내외의 오차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적협회에서 조금만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건축행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명확한 지적도를 확대하여 배치한 배치도가 여려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이웃간의 분쟁은 물론 건축사들을 당황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소정 거리가 외국의 예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지의 영세성을 지닌 조건에서는 한 뼘의 대지에도 무서운 애착심과 보호 의식이 작용하여 진정 혹은 분쟁과 심지어는 소송에 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소정거리 확보가違法건축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勘査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繫要하다. 또한 境界測量制度의 補完이 시급하다. 측량공사에서 일단 측량한 경계선의 保存方法이 必要하다.

대부분의 경계紛爭이나 違法建築物이 경계선 불명확에서 發生되는 만큼, 開發地域의 경계선은 가로망선에 따른 永久말뚝으로 地下에 埋立함으로 인접대지주가 하시라도 必要時에는 永久말뚝을 기준으로 경계를 確認할 수 있도록 제도적 補完이 필요하다.

2. 基礎中間検査申請書: 건축주가 지중보 혹은 地下室 바닥 配筋을 끝낸후 건축사에게 通報하면 건축사는 現場検証後 기초중간검사 신청서를 提出한다. 申請書를 接受 받은 担当公務員은 現場出張 확인후 기초중간검사 필증을 交付하여 준다. 그 기간은 약 3일이 所要된다. 規定대로 한다면 건축주는 기초중간검사 필증을 交付 받기 前에는 공사를 中斷하고 있어야 한다. 違法精神이 투철한 건축주가 있어 규정대로 공사를 한다면 큰 애에 봉착할 것이다. 근래와 같이 人力難인 時代에 미리 콩크리트공을 手配하지 않으면 工事が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契約을 맺었다 하면, 建築職 공무원이 소정 기일내에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違約이 되는 것이고 違約時에는 契約된 人件費는 그대로 支払하여야하게 된다.

근래와 같은 建築技能工不足現象下에서는 技能工의 工事契約이 항상 밀려 있으므로 건축주의 애로는 매우 큰 것이다.

비단, 基礎中間検査만이 아니고 屋上 중간검사도 같은 케이스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기초중간검사 및 옥상중간검사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사기간은 공사비와 비례한다. 공사기간의 延長은 공사비 上昇을 뜻하는 것이다. 제도란 아주 대수롭지 않는 条項이라 할지라도 전 国民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 生覺한다.

적절한 시정책이 요망된다.

3. 工程報告: 건축사는 감리건축물의 工事が 着工된 後 竣工까지 매 15일마다 공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모든 建築物의 工程보고서가 어김없이 15일마다 건축파에 제출되고 있다. 과연 그 報告書대로 건축사가 어김없이 15일마다 現場検査를 하였을까, 本研究者도 設計事務所를 經営하면서 工程報告書를 為하여 현장 조사한 記憶이 거의 없다.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각 工事場마다 매 15일마다 檢査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時間의으로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건축사에 責任을 지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면 改善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제4절 竣工過程

건축물이 준공되면 1週内에 竣工検査 申請書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준공에 필요한 具備書類는 비교적 簡素하다. 그러나 모 区厅에서는 비 住居用 建築物에 限하여 竣工寫真까지 添附시키고 있다. 確認行政의 철저한 措置라 생각한다. 그러나 改善의 여지가 있다. 비주거용은 担當公務員이 現場調査를 한 후 준공처리 하여주고 있다.

建築職 公務員이 현장조사를 하였다면, 写真까지 添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장사진을 건축주에게 依頼하여 摄影하여 보면 官에서 지시한대로 촬영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건축사가 현장 출장하여 正面사진, 側面사진, 植樹사진, 前面道路舗裝사진 등을 摄影하여 現象을 맡긴다. 竣工行為가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름 한통을 購入하여 1전 촬영하고, 현상을 맡기면 나머지 필름은 버리게 된다. 国家的으로 막대한 損害다. 건축사는 본의 아니게 写真師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수차 区厅長에게 陳情하였으나 是正이 되지 않고 있다. 즉 区厅長 혹은 建設管理局長은 부하 職員의 현장조사도 믿지 않는다는 結論이 나온다.

竣工具備書類에 前面道路舗裝사진을 첨부하도록 措置한 区厅도 있다. 새마을 안길 舗裝事業을 推進하고자 하는 熱意와 궁여지책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서울 외곽지대開発地域은 보도부력을 잘아도 공사용 추력의 通行이 頻繁함으로 대부분 破損될 것이 自明한 일이다. 그러나 잘

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일부 建築主는 보도부력을 깔고 写真撮影을 하여 일단 竣工畢을 交付받음과 동시에 撤去해 버린다.

건축사는 이런 일에도 関与해야 하고 神經을 써야한다.

第5節 住宅建築許可節次 改善力案에 依한 業務量

1976. 7. 1부터 住宅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國務總理指示覺書제 8호)에 의해 660m² 미만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建築士 3人共同責任下에 運書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建築許可：건축허가 신청 檢討報告書만에 의거 8 근무시간 이내에 許可处分하고 建築士 및 建築主에게 許可通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軍事施設 保護区域内의 住宅인 경우에는 管轄軍부대에 協議 要請하고 協議 3일후 8時間勤務 以内에 許可处分하고 許可通知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竣工検査：준공검사 조사서만에 의거 8 근무시간 이내에 준공검사 处分하여 建築士에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라고 되어 있다.

違法事項：前項의 違法事項에 대한 措置는 아래 범위내에서 엄중조치하여 일별백계의 실수를 거두도록 한다.

建築物：使用禁止(단, 故意 없이 극히 輕微한 違法을 한 경우에는 改修命令)와 電話, 電氣, 水道의 供給禁止

建築主：告 発

建築士：免許取消 또는 登錄取消와 告発

이상과 같은 住宅建築行政의 일대 刷新策을 대다수 건축사는 歡迎으로 받아 드렸다. 그것은 建築許可 및 竣工의 迅速한 처리에 매료되었음이며, 違法建築物發生에 3人 건축사가 相互 抑制作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安逸한 생각에서였다. 또 하나는 違法事項에 대한 措置에 큰期待를 가졌다. 종전 건축사일변도 責任追窮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違法建築物 使用禁止 또는 撤去, 전기, 전화, 수도 등의 斷切, 건축주告発등 일별백계의 실수를 겸우겠다는 条項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期待가 크면 失望도 크다고 하였듯이 許可竣工이 8 근무 시간내에 처리된 일을 記憶할 수 없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措置가 規定대로 이루어졌다는 消息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다. 단지 건축사의 苛酷한 戒戒만 있었을 뿐이다.

만일, 규정대로 실시하였다면 77년도, 78년도 2年동안 違法建築物로 困한 징계 건축사가 715名이므로 715 件의 건축물이 사용금지, 철거, 전기, 수도, 전화의 단절이 되었어야 한다.

1개洞에 1 件만 強力措置를 취하였어도 위법건축물은 대폭 줄었을 것이다. 3인 連署로 인한 具備書類도 건축사에게는 過重한 業務量이 되고 있다. 건축허가 点検표(check list)에 건축사의 타이틀과 印章을 받는 過程도

어려운 일이며 着工申告書, 中間検査申請書, 工程報告書 竣工検査신청서등 모든 보고서에 連帶건 축사의 署名捺印이 필요하다.

타건축사가 항상 사무실에 근무중이면 모르나 現場監理外出 地方出張, 休暇등 不在中일 때에는 몇 일이고 보고서가 遲延되기 마련이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하여 아예 各種報告書에 무더기로 날인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実情이다.

타 건축사의 위법건축물이 발생시 建築士 3人이 同時에 건축주를 訪問하여 是正策을 呼訴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타 건축사의 위법건축물로 몇個月씩 営業停止处分을 당하는 気分은 남아 알지 못하는 悲哀이다.

第6節 建築士의 資質向上과 使命感

1. 建築士의 呈現—建築士가 建築家로의 職業을 選択할 때 設計해서 致富해 보겠다고 選択한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藝術家는 우리나라의 呈現로서는 배고픈 職業이었으니까. 누구나 高邁한 理想과 抱負 그리고 멋진 創作의 꿈을 안고 建築에 情熱을 불태워 보았다. 밤을 세워 設計에 没頭하던 補助員生活, 한장의 図面에 没頭하다 보면 날이 밝는다. 公休日도 없고 休暇도 없다.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穎음을 불태우던 研究時節을 누구나 갖고 있다.

고통의 歲月이 흐르고 建築研究所의 所長이 되었다. 10余年이 지난 오늘에도 零細性을 벗지 못하는 研究所를 10余坪 事務室에 테이블 몇개와 쏘파 한개, 그리고 設計台 몇개가 전부인 모습이 오늘의 呈現이다.

옛날의 꿈은 사라지고 経營者로서, 建築士로서, 社會의 被雇傭人으로서의 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東奔西走한다. “顧客으로부터 電話가 오면 중국집 짜장면의迅速配達과 같이 즉각 찾아뵈려 가는 것이 呈現의 모습이다.” (이승우씨의 建築家の 使命과 보수 1975年 建築士 10年에 즈음하여 “오늘 그리고 建築”)에서의 一節이다. 너무나 비슷하고도 適切한 그리고 서글픈 表現이다.

“..... 中略.... 보체는 建築主를 代身해서 図面보따리를 들고 굽실거리며 열어낸 荣光스럽기조차 한 建築許可證을 찾아야 주면.... 中略....” (이명환씨의 「工事監理」 1978年 建築監理, 建築許可제도 및 建築審議에 関한 Symposium에 즈음하여)에서,

그러나 이모든 呈現이 누구의 責任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못난탓, 부족한 탓이라 생각해야 한다.

일을 獲得하기 為한 모습을 보라. 拾數年間 하나의 學門을 為하여 그처럼 努力하던 学者の 모습이 아니다. 藝術人の 모습은 더욱 아니다. 作品을 만드는 實力보다 많은 作品을 빨리 獲得하고 处理하는 設計事務所만이 存在하고 羨望의 対象이 된다. 社會와 野合하는데 能하고 안되는 일도 되도록 만들며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드는 建築

士야말로 等等한 그리고 有能한 建築士이다. 即經營에 能한 사람이 頭角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現実이다. 先進國의 建築士와 같은 自由로운 그리고 豊足한 創作風土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制度의 急作스런 改善을 要求하기도 아직 어렵다. 주어진 条件下에서 學門에 紹依하고自己完成에 疎忽하지 않아야 하며 社会的 使命에 계을리 하지 않아야 겠다. 建築家의 品立向上에 責任感을 가지며 善隣하는 마음가짐이 必要하다.

2. 建築士의 使命

1964. 年 4 月 建築士法이 發効된지 어언 13년의 歲月이 흘렀다. 全国 1.600余會員이 跛은 年輪속에서 長足의 發展을 하여 왔음에도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6.25로 因한 廢墟속에서 오늘과 같은 都市建築을 이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도 결코 그 功過를 過少評価할수없다.

그러나 이 時點은 量的인 發展보다는 質的인 向上을 要求하고 있다. 建築物은 歷史性을 지닌 만큼 後代에 부끄러움이 없는 作品을 남겨야 할것이다. 우리는 전통文化의 繼承과 先進技術의 適切한 消化에 계을리 할 수 없으며 새로운 技術開発과 制度의 改善에 傍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使命이다.

제4장 結論

以上에서 檢討하여본 바 建築士가 그 본연의 業務에서 充實치 못하고 制度에 암매어 있음을 알았다.

制度의 適切한 改善은 勿論 建築士의 質的向上과 使命感을 직시하여 과도기를 脱彼하고 建築文化中興의 세시대를 전개할 態勢를 確立하여야 겠다.

1. 諸 法規의 미비점을 補完하여 명랑한 行政体制를

誘導하고 建築士의 創作風土를 改善하여 建築의 質的向上을 期하여야 한다.

2. 指示行政 일변도를 지양하고 教育, 理解, 協調의 誘導行政에 역점을 두어 相互 信賴할수 있는 分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管理제도의 改善과 管理비의 實現化로 建築士의 管理責任의 식을 고취하고 違法建築物 發生 근절책으로 建築主와 시공자의 違法行為를 근절할수 있는 법적 補完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以上 跛은 研究期間에 미쳐 다루지 못한 改善方案에 대하여 앞으로 研究할바 크다고 하겠다.

参考書籍

1. 이 경 회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組織 實態에 대한 調査研究 建築士誌 第86号 87号 1976.
2. 이 영 현 改定 建築法 및 同 施行令 해설 建築士誌 第108号 1978.
3. 김 희 춘 建築 行政 機構 개편을 促求한다. 建築士誌 第116号 1978.
4. 大韓建築士協會 住宅建築許可 절차 改善方案 實施에 관한 전의 建築士誌 第88号 1976.
5. 최 창 규 建築行政의 問題点과 그 改善方向. 오늘 그리고 建築 大韓建築士協會 1975.
6. 이 승 우 建築家의 使命과 보수 오늘 그리고 建築. 大韓建築士協會 1975.
7. 이 명 환 공사감리
이 문 보 建築許可制度
김 진 일 建築設計審議
建築감리, 建築許可制度 및 建築審議에 関한 Symposium에 즈음하여, 주제 논문
大韓建築士協會 1978.